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 The Place of Original Farm-products Home

농림부 식품산업과

### 1.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규정

제정 1999.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2000. 3. 29 농림부고시 제2000-23호  
 2000.11.20 농림부고시 제2000-7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25조,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4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2번을 참조하면 된다.)

제3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장 판매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50cm<sup>2</sup>이상 : 12포인트(18급) 이상

(2) 포장표면적 50cm<sup>2</sup>미만 : 8포인트(12급) 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00.11.20개정)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티커, 용기표면, 풋말,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스티커(현품) : 가로 3cm×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나. 용기표시 : 가로 10cm×세로 5cm 이상

다. 풋말표시 : 가로 10cm×세로 5cm×높이 5cm이상

라.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②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① 시행령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된 가공품

가.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50cm<sup>2</sup>이상 : 12포인트(18급) 이상

(2) 포장표면적 50cm<sup>2</sup>미만 : 8포인트(12급) 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00.11.20개정)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혼합비율”과 2번째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 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혼합비율”과 수입원료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 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

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00.11.20신설)

⑤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증감범위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00.11.20개정)

-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제5조(시료 검정기관) ①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00.11.20개정)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11.20개정)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 · 국립수목원('00.11.20개정)

4) 가공품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1999. 12. 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농산물원산지표시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고시)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전 농산물원산지표시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고시)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외에 새로 추가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2000.12.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② 이 요령 시행 전 농산물원산지표시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고시)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포장지는 200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2000. 3. 29)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에 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새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0.12.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 부 칙(2000. 11. 20)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전 농림부고시 1999-82호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200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요령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 2. 원산지표시대상품목(제2조관련)

### 2-2. 국산 농산물

#### 2-1.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  
부 장관이 공고한 품목

농산물의 범위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포함한다. 대상품목은 [표  
1] 참조.

[표 1] 수입 및 국산 농산물 품목별 대상품목

| 품목류  | 대 상 품 목   |
|------|---|
| 곡 류  |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 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울무   |
| 두 류  |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
| 서 류  | 감자, 고구마   |
| 채유종실 |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깨   |
| 채소류  |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br>토란줄기, 멜론, 우엉   |
| 약재류  |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질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br>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br>오배자, 우슬, 황정(등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br>택사, 패오,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
| 버섯류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
| 견과류  | 호두, 잣, 밤, 은행  |
| 인삼류  | 수삼  |
| 산채류  |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
| 육 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우족, 쇠꼬리, 쇠곱창, 돈족  |
| 기 타  | 천연꿀, 녹용, 녹각, 꽃감, 건조누에   |

# 특 집

## 포장식품표시

[표 2] 가공품 품목별 대상품목

| 품 목 류      | 대 상 품 목  |
|------------|--|
| 과자류(포장된것)  | 식빵, 떡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잼류('00.11.20개정)  |
| 아이스크림제품류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
|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우유,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기수분해식품                           |
| 식육제품       | 소, 돼지, 닭, 산양,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면양의 식육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br>(50%미만 함유된 경우도 포함)   |
| 통·병조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류, 묵류  |
| 식용유지       | 대두유, 옥배유, 유채유(채종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낙화생유, 고추씨기름, 혼합식용유  |
| 다류(포장된것)   |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
| 음료류        |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채소류·과실류·곡류·두류를 원료로 사용한 혼합음료   |
| 면류(포장된것)   | 밀, 메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
| 특수영양식품     |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00.11.20개정)   |
| 조미식품       |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케첩,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
| 인삼제품류      | 홍삼, 백삼, 태극삼,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인삼캡셀(정)류, 기타인삼식품,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홍삼차류, 홍삼음료, 홍삼캡셀(정)류, 기타홍삼식품 |
| 절임식품(포장된것) | 양파·오이·마늘·무를 주원료로 사용한 절임류, 배추·무를 주원료로 사용한 김치류('00.3.29개정)   |
| 기타식품류      | 즉석건조식품, 매주,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채가공품류, 추출가공식품, 콩나물  |
| 단순가공품      |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을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품목   |

### 2-3. 가공품

당해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식품공전의 정의·

분류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표시대상품목으로 새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한다 ('00.11.20개정). [ko]